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23

발의연월일: 2021. 5. 6.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김영호

박상혁 • 신정훈 • 양정숙

오영환 • 유정주 • 임오경

임호선 · 한병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하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 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8조제9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7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방공사의 사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지방공 사를 대표한다.

제7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 중 "임직원"을 "임직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임직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⑧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⑧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지방공사의 사장은 그 기관
	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사
	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지방공사를 대표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
	업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
	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
	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경
	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
	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
	<u>할 수 있다.</u>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u>임직원</u> 은	의제) <u>임직원,</u>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임직원, 지

공무원으로 본다.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u>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은</u>---